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54127(본소), 2020나54134(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청산금청구]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54127(본소), 2020나54134(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515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은규

변론 종결2021. 4. 30.

판결 선고2021. 5. 28.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5151(본소), 2019가단52071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 및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6,56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6,56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위성방송프로그램 송출업, 인터넷정보통신 부가서비스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방송프로그램 제작·판매, 광고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1. 피고와 사이에 광주·전남 28개 지역을 관할하는 총국을 설립하기로 하는 지역총국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주)BE(피고)

을 : 광주·전남 총국(원고)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희망하는 전국 광주·전남 지역에 F 총국을 설립해 전국방송(케이블방송)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분장 업무] 본사와 총국의 상호 협의 아래 전국방송(케이블방송)이 효율적으로 분장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홍보광고 대행사업(제반 비용공제 후 순수익기준)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에 관한사항(연간계약) / 총국수익률 70%

2) 지자체 특산품광고 대행사업(제반 비용공제 후 순수익기준)

지자체 특산물 영상제작 및 송출에 관한사항 / 총국수익률 70%

3) 지자체 지역문화축제 및 행사 대행사업(제반 비용공제 후 순수익기준)

지자체 지역문화축제 및 행사 운영에 관한사항 / 총국수익률 70%

4) 이외 지자체 TV 방송 제작 및 송출 대행사업(제반 비용공제 후 순수익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36개 일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관련 수익사업

5) 이외 총국 사업의 세부내용

지자체 관련업무,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 등의 홍보 및 안내, 자자체 관련 각종 선거 및 단체장, 지방의회, 국회의원 관련 보도, 기타 적정한 지방뉴스 취재 및 보도.

[사업권 이외 지역의 사업발생시 분배원칙]

관할총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영업사항의 발생 시 본사(중앙)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전체 수익의 5%의 로열티를 관할총국에게 지불하고, 본사도 5%를 관할총국에게 영업종료 시점까지 지급한다.

(타영업지급수입 10%지급)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2년 단위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 1월 전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한다.

제4조 [계약해지] 위 제3조의 계약 만료 1월 전에 갑·을 상호협의 아래 기타 사유로 해당 총국 설립 운영 연장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계약 해지를 위한 청산작업을 한다. 청산작업이란 을이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았거나 받아야 할 각종 사업의 광고비 등을 갑에게 전액 인계한 후 갑에게 맡긴 사업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

사업보증금 : 200,000,000원

총국설립 초기 투자비용 : 20,000,000원

[특약사항]

1) 광주·전남 28개 지역을 관할하는 총국으로서 광주·전남 총국의 사업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본사는 광주·전남 28개 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2) 광주·전남 총국 설립 초기 투자비용은 20,000,000원으로 한다.

3) 총국은 관할지역 본부 및 지사의 설립 그리고 관리운영에 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단, 총국은 본사와 사전협의 및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4. 22. 초기 투자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 2016. 4. 29. 사업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렌트차량 4대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2. 21.경 피고에게 '2년간의 계약만료시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국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피고에게 위 렌트차량 4대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행사업 자료를 반납하였고, 2018. 4. 26.경 피고에게 사업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 등 계약 해지에 따른 협의에 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8. 4. 20. 기간만으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른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렌트차량 4대를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인 케이블방송, 즉 방송매체로 인한 매출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의 수익금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지급의무는 계약 해지에 앞선 선이행의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는 케이블방송 외에도 인터넷신문, 옥외광고, 인쇄매체 등이 포함되므로, 원고가 청산작업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은 위 각 매체로 인한 원고의 수익금 중 30% 상당액이고, 원고가 위 청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 종료의 방법 및 청산작업의 의미 이 사건 계약서 제2 내지 6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4. 21.부터 2018. 4. 20.까지 2년 단위로 하되 계약 만료 1월 전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되고, 어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7일 전까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연장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청산작업이란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았거나 받아야 할 각종 사업의 광고비 등을 피고에게 전액 인계하고, 피고로부터 사업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서 '제반 비용 공제 후 순수익기준'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원고의 총 매출액의 정해진 수익률(원고 70%) 상당액을 원고에게 사업분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위 청산작업에 따라 피고에게 광고비 등을 전액 인계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으로 종료되어 추후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분배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별도로 초기 투자비용 2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청산작업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는 광고대행사업, 행사 대행사업, 방송 제작 및 송출대행 사업 등으로 얻은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 중 피고의 수익률 30% 상당액을 지급하고 사업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위한 청산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만료일보다 약 2개월 전인 2018. 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4. 20.경 피고에게 위 렌트차량 4대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행사업 자료를 반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4. 20.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계약 종료로 인한 청산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C, 이 법원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는 방송매체인 케이블방송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0, 11, 16, 19,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E'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F라는 'H'라는 제호로 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며, 월간잡지인 'T'을 발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매체는 'F'라는 방송매체와 월간잡지인 'I'이라는 인쇄매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전후로 오직 방송매체로 인한 수익만 얻고 있었고, 인쇄매체나 인터넷매체를 통한 수익은 얻지 못하였으며, 옥외 광고업은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피고와 원고가 분장하여야 할 업무를 '전국방송(케이블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하단의 구체적 업무의 내용으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지자체 특산물 영상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일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 관련 수익사업', '지자체 관련 업무, 각 지역의 다양한 행사 등의 홍보 및 안내, 지자체 관련 각종 선거 및 단체장, 지방의회, 국회의원 관련 보도, 기타 적정한 지방뉴스 취재 및 보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들은 방송매체를 이용한 업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에게 방송장비인 카메라를 지원하였을 뿐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1. 18.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5. 9. 신문사업등록을 하고 일간신문인 'J'(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간하였고, 2017. 1. 경에야 옥외광고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2017. 4.경 K공사와 역구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추가한 위와 같은 사업은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참석한 C은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의 분장업무는 방송매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6, 25호증)를 작성한바 있으나, 이는 피고의 요청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C은 위 사실확인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철회요청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제1심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케이블방송(방송매체) 외에도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옥외 광고 등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청산금의 존부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로 인한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는 케이블방송, 즉 방송매체에 한정됨은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으로 방송매체로 인한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3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1. 강진군청으로부터 방송캠페인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로 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방송캠페인 광고 제작을 위한 제반 비용은 그 광고비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방송매체로 인한 원고의 순수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업무로 인한 광고비 일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에는 케이블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지면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한 업무가 포함되고, 피고는 위 각 업무로 인한 광고비 수익금 중 70% 상당액을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방송매체, 인터넷 신문, 옥외 광고,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얻은 155,201,823원 상당의 광고비 중 피고의 수익금에

해당하는 46,560,540원(= 155,201,823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업무는 케이블방송에 한정되고, 방송매체로 인한 수입도 강진군청으로부터 수령한 프로그램 제작비 7,000,000원이 전부인데, 프로그램 제작비는 광고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8. 4. 2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 범위는 케이블방송에 한정되고, 방송매체로 인한 원고의 광고수입은 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불과하며, 위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수익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은 위 2의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무렵 원고의 청산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영

판사김윤선

판사김효진